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0. 29 선고 2020가단11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별지 1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 종결2020. 9. 17.

판결 선고2020. 10.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2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지 중 '별지 기재 배당금'은 '별지 3 배당표 기재 각 해당 배당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가. 피고들은 과거 원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들이다. 피고들과 소외 B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단1628호로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금원을 전부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한편, 원고의 금전채무자인 주식회사 D는 2019. 9. 5.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공탁관에게 2019년 금 제672호로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1순위 배당이 재차 이루어졌고, 그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별지 3 배당표 기재와 같다.

라.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그에 해당하는 배당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그 구체적인 부당이득반환의 방법으로서,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배당금 상당액의 금전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배당금 상당액의 금전반환 또는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의사표시 등을 구한다).

2.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고,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반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즉,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에 한정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등 참조). 즉,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두 소송의 심판의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배당이의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은 원고의 손해발생까지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결과이다(가령, 배당을 받은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지만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승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는 승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 이외에 2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2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가 이 사건 공탁금의 총액을 상회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자기 앞으로 배당될 금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으로서의 손해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은 2020. 9. 17.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즉 원고의 손해 발생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피고들로부터 해당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정산할 계획이라는 취지로만 답변하였을 뿐 그에 관한 추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된 피고 F의 2020. 5. 29.자 답변서에도 원고의 손해 발생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답변서를 2020. 6. 4. 송달받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일부 피고들(피고 G, H)이 원고와의 법정다툼을 원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자신들의 배당금 출금청구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진술간주되는 서면에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3230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의 청구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한 다른 피고들(피고 I, J, K, L, M)도 피고 G, H와 유사한 취지로 구술 변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술 변론의 주된 취지를 인낙의 의사표시, 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승인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이해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허민

별지